

교원연수제도 개선방안

▶ 교원연수제도 개선안 요약 ◀

1.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격·직무연수 강화

□ 교장·교감 자격연수 개선

- 리더십 및 직무수행 능력개발을 위한 실무·실습 강화
- 교장자격연수 기간을 6주에서 12주로 연장하고 연수내용 강화 및 방식 다양화
- 적정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교장 자격연수기관을 확대하되, 연수 시기는 임용 전후에 적절하게 배치

□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영역 개발

- 동일한 자격연수는 최소한의 공통 교육과정 이수
- 성인 학습자의 발달적 특성에 적합한 연수내용, 연수방법, 평가방법 등 포함

□ 직무연수 이수학점제 운영

- 5년을 주기로 최소 10학점(150시간) 이상 이수
- 입직 후 6년차부터 적용

□ 직무연수성적 평가 등급제 도입

- 연수성적 점수제 평가방식을 등급제(4단계 구분)로 전환하여 점수와 함께 병기

□ 직무연수 경비지원 확대

- 직무연수 60시간 1강좌 표준연수비(13만원)를 기준으로 지원

2.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다양한 연수 확대

□ 맞춤형 연수운영 지원

- 교원들이 원하는 연수과정 운영
- 자발적 소규모 연수 프로그램 지원

□ 참여식 연수방법의 확대

- 연수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교원이 연수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선

□ 현장 교원의 연수강사 활용 확대

- 우수 교원을 발굴하여 연수기관 겸임강사로 위촉

□ 연수기관별 연수대상 제한 폐지

- 교원들에게 연수기관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급별로 설정되어 있는 연수기관별 연수대상 제한 폐지

3. 연수기관 질 관리체제 확립

□ 연수기관 평가인증제 실시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원격연수원, 시·도교육연수원, 대학부설 연수원을 평가, 시·도교육감은 특수분야 연구기관을 평가
- 교원연수기관으로서의 최소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연수기관 인가 취소

□ 원격연수 확대 및 「원격연수지원센터(가칭)」 설치·운영

□ 연수기관간 협력체제 강화

- 전국단위는 교육인적자원연수원을 중심으로 16개 시·도 교원연수원 협력체제 구성·운영
- 지역단위는 시·도교육 연수원과 양성대학간 연수기관 협력체제 구축

차 례

요약	97
I. 추진 배경 및 경과	103
1. 추진배경	103
2. 추진경과	104
II. 교원연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06
1. 교원연수제도의 종류 및 현황	106
2. 교원연수제도의 문제점	113
III. 교원연수제도 개선방안	115
1.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격·직무연수 강화	116
2. 현장 요구를 반영하는 다양한 연수 확대	120
3. 연수기관 질 관리체제 확립	123
IV. 기대 효과	126
V. 추진 계획	127
[붙임자료]	
외국의 교원연수제도 및 시사점	128

I. 추진 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교원의 능력개발 및 전문성 신장 필요
 -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끊임없는 자기개발 필요
 - 21C 지식·정보화 사회는 교원들의 전통적인 역할 재구조화와 더불어 그것에 걸맞은 역할 수행능력 요구

-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연수 요구 증대
 - 현장의 연수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연수기관 위주의 전통적인 연수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 증대
 - 학교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른 교육행정가 자격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요구 증대
 - 교원들의 수업부담, 이동시간 등 현실여건을 고려한 연수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요구

- 현직 연수기관의 기능 재검토 및 질 관리 필요
 - 동일한 자격연수 내용이 연수기관별로 상이하여 표준교육과정의 개발과 연수과정에 대한 평가 등 질 관리 필요 증대

2. 추진경과

	정책 배경 및 방향	성과와 한계
문민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방안’(95.5.31)의 일환으로 품위 있고 유능한 교원 육성을 내세움. • 교원의 전문성을 계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 강화방안으로 일정주기별 연수 의무화, 정보통신 공학을 활용한 원격 연수 실시, 연수기관간 경쟁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의 연수기관 선택권 부여, 연수결과를 인사와 보수에 반영하는 정책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연수의 도입과 확산에 계기 마련 • 시·도교육연수원, 국립 사범 대학과 교육대학이 독과점하던 연수를 다양한 연수기관으로 분산하는 계기 마련 • 추가적인 재정 소요를 요하는 일정 주기별 연수 도입과 연수 결과를 인사와 보수에 반영하는 정책 등은 미추진
국민의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정부는 ‘교직발전종합 방안을 마련하고(01. 5.)에 교원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신규교사 연수 강화, 자율연수휴직제, 장기해외유학제, 부전공 자격연수 확대 등 시안 수준의 정책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단체의 반발 등으로 ‘교직 발전종합방안’ 전체를 정책화 하는 데는 실패하였으나 신규 교사 연수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장기해외유학제, 부전공 자격연수 확대 등의 정책은 추진 • 부전공 자격연수는 주전공 교사들을 양성하는 대학의 반발로 내실 있게 추진되는 데는 한계 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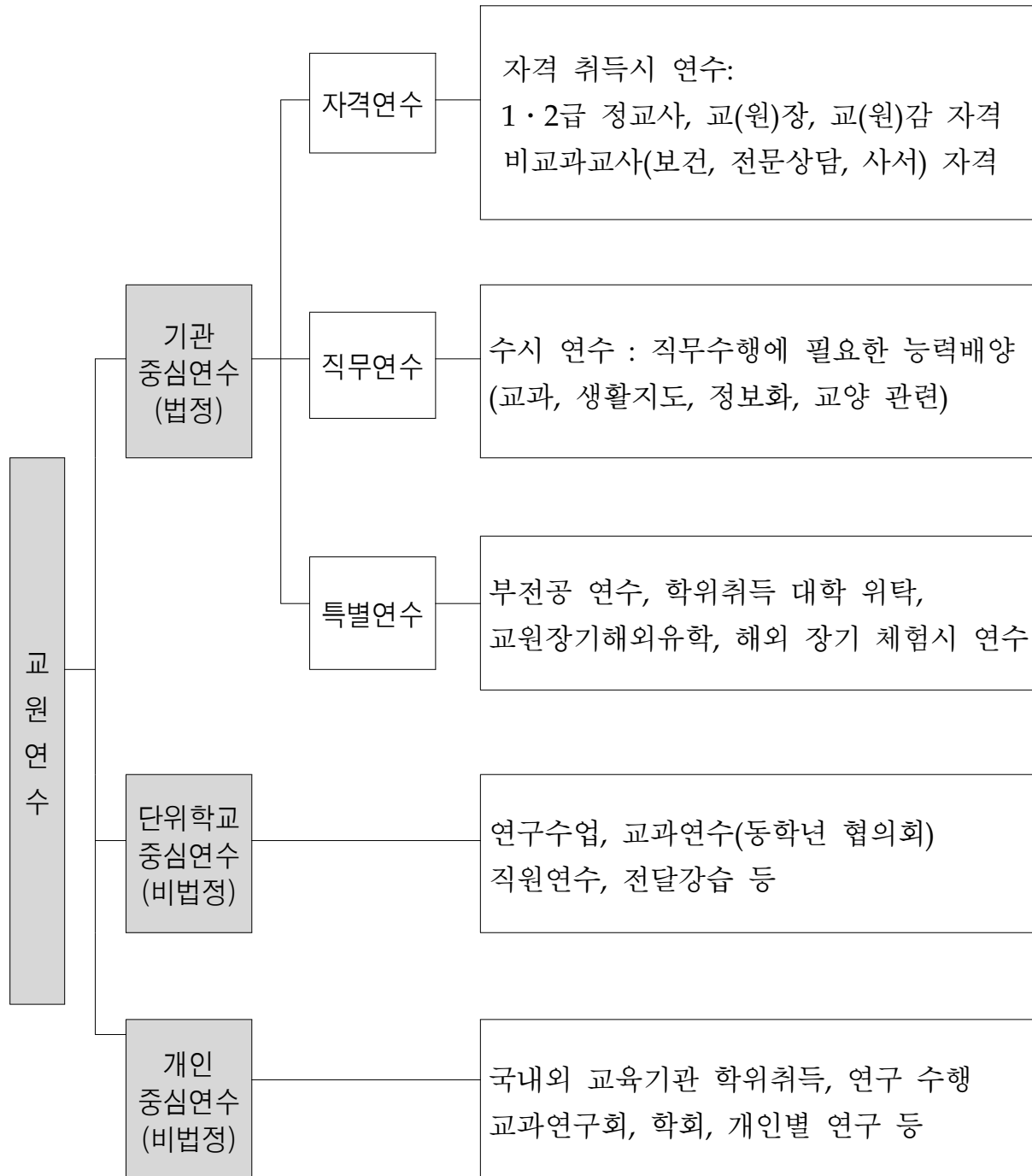
□ 참여정부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를 제안(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T/F,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03. 2.)

-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연수 전반에 대한 청사진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진을 구성·운영하고('04. 6.~ 12.), 교원연수 체제 개선 기본 계획 시안 작성('05. 1~ 3.)
- 교육인적자원부는 연수개선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교원정책혁신기획단(T/F)을 구성하여('05. 4.),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연수체제 개선방안(시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공론화와 검토를 교육혁신위원회에 요청('05. 10.)
- 교육혁신위원회는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06. 1.)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연수체제 개선방안(시안)'을 공론화하고 검토
 - 지역순회토론회('06. 3.)와 워크숍 및 내부토론('06. 3. ~ 4.), 그리고 실무위원회의 운영('06. 2. ~ 7.)
 - 교육혁신위원회는 교원특위 활동종료 이후 수차례의 내부토론회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교원연수제도 개선방안 마련('06. 8.)

Ⅱ. 교원연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교원연수제도의 종류 및 현황



가. 교원연수제도의 종류

□ 자격연수

< 법령상의 자격취득 연수과정 >

구분	교(원)장	교(원)감	1급 정교사
대상자	교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교육경력자	1정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교육경력자	2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자
연수시간	180시간 이상	180시간 이상	180시간 이상

※ 이 외 비교과교사(사서, 보건 등) 연수과정도 있음

< '05년도 자격연수 운영 현황 >

구분	교(원)장	교(원)감	1급 정교사
연수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지역 : 서울대·서울교대 서울외 지역 : 교원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교육연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지역 교육대학·사범대학 ·교육연수원 등
연수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지역 : 4월~6월 교원대 : 4월~12월(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 : 4월~6월 기타 : 7월~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학기간(동·하계)
연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연수 : 시·도에 위탁(원격연수 병행) 본 연수(강의중심) 민간위탁(일부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의중심연수 (원격연수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의중심 연수
연수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 90만원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 70만원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 40만원 내외

□ 직무연수

○ 연수프로그램

- 교과 및 생활지도, 정보화 등 교직과 관련된 과정이 대부분이나, 성인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운영으로 연수에 대한 불만 제기

※ 연수의 '내용, 방식, 평가' 등에 교원들이 불만족('04.12월 OECD세미나)

○ 연수 참여기관

- 시·도교육연수원, 특수분야연수기관이 많고, 중등의 경우 원격교육 연수 참여가 초등에 비해 높은 편

※ 연수기관 참여비율 : 시·도교육연수원(32.5%), 특수분야연수기관(30.7%), 원격연수원(20.2%), 대학부설연수원(16.6%)

○ 연수비 지원

- 국가정책상 필요한 연수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전액 지원
 - 교원의 자발적 필요에 의한 연수는 시·도교육청별 일정액 지원
- ※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연간 1인당 60시간 기준 1과정 연수 총경비의 75% 지원

○ 연수 이수 실적

- 공립학교에 비하여 사립교원들의 연수 참여율 저조
- 1년간 연수 이수 실적이 전혀 없는 교사의 경우 28.2%, 관리자 23.7%

〈 연수 미참여 현황 〉

('04. 3. 1 ~ '05. 2. 28)

구분	총인원	교 사		총인원	교(감)장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초등	공립	133,409	24,902	18.6	11,111	2,466	22.2
	사립	1,869	513	27.4	160	113	70.6
중등	공립	132,589	38,043	28.7	6,462	914	14.1
	사립	70,805	32,029	45.2	3,369	1,508	44.8

□ 특별연수

○ 국가나 시·도교육청의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실시하는 연수

- 부전공 연수

- 국내외 교육(연수)기관에서 학위취득 및 연구과제 수행

※ 해외연수(학위 197명, 비학위 57명) 및 교원대 석사과정(431명, '04년)
위탁연수 실시 중

○ 교원의 수요는 증대하고 있으나, 예산사정상 대폭 확대에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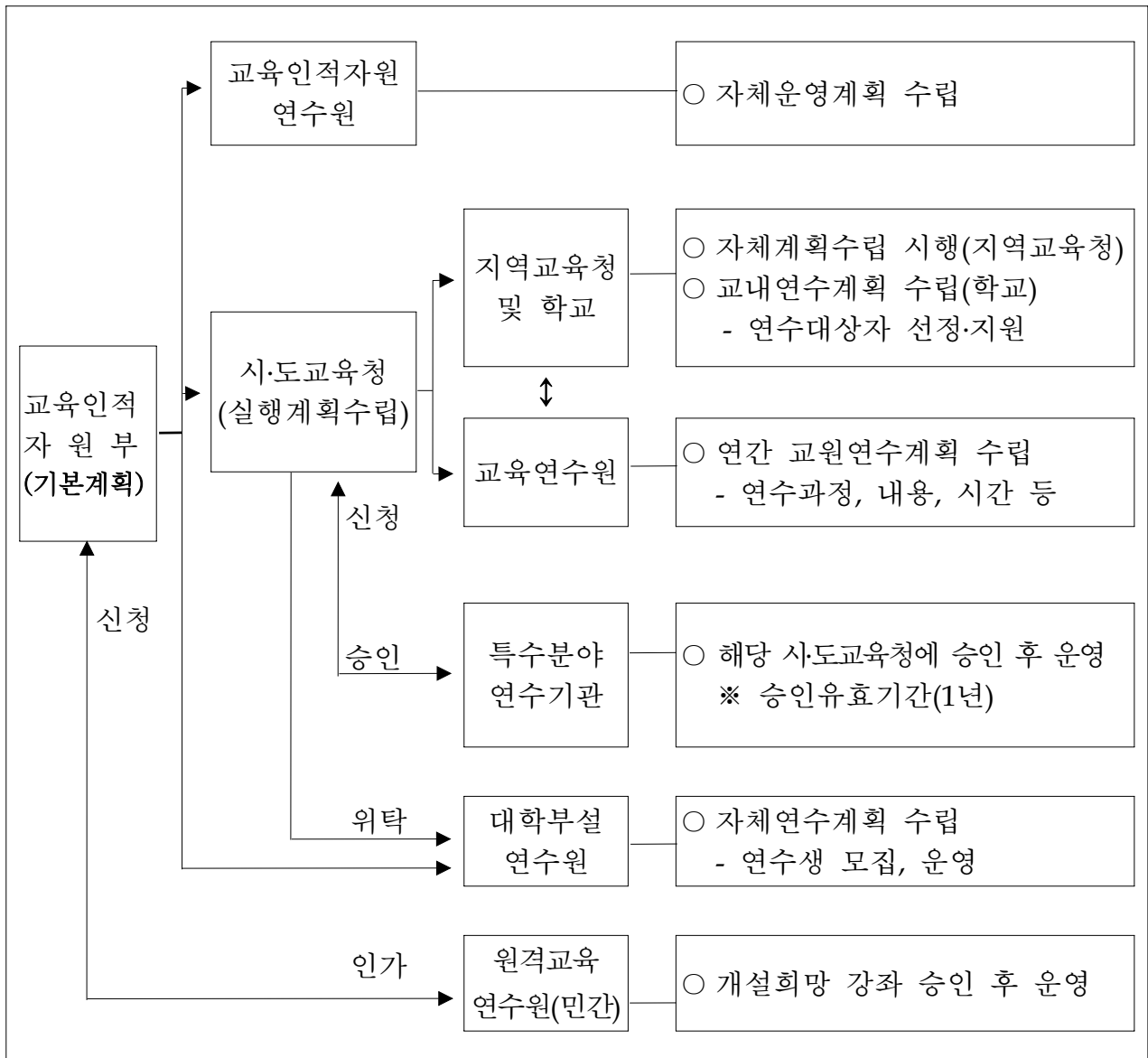
나. 교원연수기관 현황

□ 교원연수기관의 종류 및 기능

구분	연수기관	기관수	주요 기능
국 가	교육인적자원연수원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감), 교장(감), 교육전문직 • 연수 발전 및 자료 개발
시·도	시·도 교육연수원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2급, 교감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 신규교사 직무연수 • 교사, 교육전문직 직무연수
대 학	대학부설 종합교육연수원**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자격 및 직무연수 • 각급 학교 교원 직무연수(원격교육)
	초등교육연수원 (교육대학교 부설)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1·2급 정교사 자격연수 • 유·초등 교원 직무연수
	중등교육연수원 (일반대학교 부설)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등1·2급 정교사 자격연수 • 중등 교원 직무연수, 부전공과목 연수
	교육행정연수원*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등 교장 자격연수 • 교육행정 지도자 과정
민 간	원격교육연수원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전문직 및 각급학교 교원 직무연수
	특수분야 연수기관	1,589	

(* 서울대 부설, ** 한국교원대·한국방송통신대 부설, *** 특수분야연수기관수는 매년 달라짐.)

□ 교원연수 운영 체계



* 연수과정 편성, 시간, 강사선정 등은 해당 교육연수원장이 주관함(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제6조 2항).

다. 연수결과의 활용

□ 연수학점제 운영('98. 3)

- 15시간 연수를 1학점으로 환산·기록
- 연수이수 실적을 승진에 반영

□ 승진시 연수성적 평정점 반영

- 교감승진시 : 자격연수 성적 9점(=180시간 연수), 직무연수 성적 18점(=60시간 연수 3개, 2개(12점)는 실적만 반영, 1개는 6점 만점 환산 반영)
- 교장승진시 : 자격연수성적 9점 직무연수성적 6점(60시간 연수 1개)

< 교장·교감승진시 반영하는 자격·직무연수 성적 및 실적 >

승진	연수	자격연수(성적)	직무연수	
			성적	실적
교감승진후보자	1정연수 9점(180시간)	9점(180시간)	6점(60시간)	12점(120시간)
교장승진		교감자격연수 9점(180시간)	"	-

2. 교원연수제도의 문제점

□ 자격연수과정의 적합성 미흡

-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에 따라 요구되는 교장·교감의 새로운 리더십과 직무수행능력 개발 미흡
- 중견 교원들의 역할수행에 요구되는 능력개발 미흡

□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부재

-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연수의 연수내용이 기관별로 상이하어 자격연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통필수적인 연수내용 부재
- 민주적 리더십, 갈등관리, 학교경영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 개발 과목 부족

□ 직무연수의 전문성 신장 기능 미흡

- 연수에 대한 동기유발이 부족하여 교원들의 주기적인 자기개발 노력 저조
- 사립학교 교원들의 연수 참여 저조 및 유인방안 미흡
- 교과지도 능력 함양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부족

□ 수요자 중심의 연수운영 및 지원 부족

- 교원의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노력 부재로 학교현장의 필요와 괴리된 연수 운영 상존

- 공급자 중심의 연수로 교원들의 자발성과 주도성 촉발 곤란
 - ※ 총 연수시간 대비 참여식 연수방식 : 유치원 1급교사 24.4%, 초등 1급 37.6%, 중등 수학1급 35.6%
 - 학교 및 개인 단위 자율연수에 대한 지원 부족
- 연수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질 관리 부족
- 연수기관 및 연수과정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및 관리 시스템 부재
 - ※ 현재 연수기관에 대한 평가는 원격연수원에만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연수 프로그램 기획 전문인력 부족
 - ※ 시·도 교육연수원의 경우 연수담당자 1인당 평균 8~9개의 연수과정 담당
 - 연수기관간 자료, 강사, 운영경험 등을 공유하는 협력체제 미흡

Ⅲ. 교원연수제도 개선방안

□ 비전 및 정책목표



세 부 목 표	주 요 이 행 과 제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격·직무연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장·교감 자격연수 강화 ○ 자격연수 교육과정의 표준화 ○ 직무연수 이수학점제 도입 ○ 직무연수성적 평가 등급제 도입 ○ 직무연수 경비 지원 확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다양한 연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연수운영 지원 ○ 참여식 연수방법의 확대 ○ 우수강사 교원 발굴 및 겸임강사제 활용 확대 ○ 연수기관별 연수대상 제한 폐지
연수기관의 질 관리체제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기관 평가인증제 실시 ○ 원격연수의 확대 및 「원격연수지원센터」 설치 ○ 연수기관간 협력체제 강화

1.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격·직무연수 강화

1-1 교장·교감 자격연수 개선

□ 리더십 및 직무수행 능력개발을 위한 실무·실습 강화

-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함양하고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신설 및 확대
 - '민주적 리더십, 미래사회에 대한 철학과 비전, 변화선도,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 갈등관리, 학교경영 관리, 새로운 문화 수용능력, 정보화' 등
- 연수방식의 다양화
 - 현임교장 멘토링제, 실무·실습, 사례연구, 민간기관 위탁 연수 등
- 사전 연수수요 조사를 통해 일부 연수과정은 교과를 복수채널로 편성하여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운영

□ 교장·교감 자격연수의 강화

- 교장자격연수 기간을 6주에서 12주로 연장하고 연수내용 강화 및 방식 다양화
- 교감자격연수 기간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프로그램 개선
 - ※ 미국의 경우 교장자격연수 기간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605시간(약20주)임.

□ 교장 자격연수기관 확대

- 적정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교장 자격연수기관 확대하되, 연수시기는 임용 전후에 적절하게 배치

※ 교장 자격연수기간의 연장으로 기존의 연수기관(현재 서울대 160명, 서울 교대 160명, 교원대 2,000명)만으로는 교장자격연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음.

1-2 **자격연수 교육과정의 표준화**

□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개발

- 동일한 자격연수는 최소한의 공통 교육과정 이수

※ 현행 자격연수는 법령에서 정한 '교과별 이수시간 배당비율'의 범위 내에서 연수기관별로 상이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 동일한 자격연수임에도 연수기관간 차이 발생

- 성인 학습자의 발달적 특성에 적합한 연수내용, 연수방법, 평가방법 등 포함

□ 공통 필수 교과 개발

- 표준교육과정은 해당 자격이 요구하는 역할과 자질 함양에 필요한 공통필수 교과 포함

- 정교사(1급) 자격연수에는 경력교사로서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과 중점 편성

- 교과교육, 교수학습방법, 학급경영, 평가 등

1-3

직무연수 이수학점제 도입

○ 5년을 주기로 최소 10학점(150시간) 이상 이수

※ 교직경력에 따라 연수 참여율이 낮아짐. 전체 연령별 직무연수 이수비율 현황 : 20대 16%, 30대 11%, 40대 8.5%, 50대 9.0%('04년 서울시교육연수원 통계 자료)

※ 주기적 연수이수 도입 : 필요 53.6%, 적절 주기 : 5년 39.9%('04. 7. 한국 교육개발원 조사)

○ 교원이 교과 및 비교과 연수과정을 자율 선택하여 이수하되, 교수·학습지도 분야를 50% 이상 중점 이수

○ 직무연수 이수학점제는 입직 후 6년차부터 적용

1-4

직무연수성적 평가방법의 개선

○ 연수성적 점수제 평가방식을 등급제(4단계 구분)로 전환하여 점수와 함께 병기

※ (예시) 연수성적 '96점'을 '96(A)'로 표기

○ 연수성적을 승진에 반영할 때는 등급의 대표점수로 반영

※ (예시) 연수성적 96(A)는 97.5로 표기하여 A등급(95~100)의 대표점수로 반영

※ 현행 평가대상 직무연수과정(60시간 이상)은 모두 100점 만점인 상대평가 성적을 부여하되, 정상 분포곡선을 적용하여 최저 80점에서 최고 100점 까지 정수로 평가함. 교원들은 연수성적을 높이기 위해 유사 연수를 재이수 하는 등 점수 경쟁의 부작용 초래

※ 등급제 도입 찬성 84.5%, 반대 15.5%(교육인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한 여론조사, '05. 8.10~9.10)

1-5**직무연수 경비 지원 확대**

- 직무연수 60시간 1강좌 표준연수비(13만원)를 기준으로 지원
 - ※ 자격연수 및 시도교육연수원 주관 직무연수 경비는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100% 지원되고 있으나 기타 직무연수 경비는 1인당 1강좌(60시간) 기준으로 65~75% 수준을 지원되고 있어 교원들의 불만 증대
- 1강좌 기준 100% 지원 이후 '10년까지 단계별로 2강좌까지 확대 지원 검토
 - ※ '05년 현재 지원비율 70%, 73억원 지원
 - ※ 시·도별 소요예산을 확보하도록 '교특예산편성 매뉴얼' 및 시·도평가 지표에 반영
- 교원의 교과교육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연수과정에 한하여 지원

2. 현장 요구를 반영하는 다양한 연수 확대

2-1 맞춤형 연수 운영

□ 교원들이 원하는 연수과정 운영

- 지역별, 학교 단위별로 연수교과, 연수과정, 연수방법, 연수장소, 강사 등의 요구사항을 기재한 연수희망 요구서 제출
- 지역교육청 및 연수원에서 희망 연수 프로그램 개설 및 연수 진행에 대한 행정 업무 지원

□ 자발적 소규모 연수 프로그램 지원

- 교육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원들의 소규모 연수 프로그램을 시·도의 '특수분야 연수과정'으로 지정하고 직무연수로 인정
- 우수 교과교육연구회 연수 및 영역별 교원조직의 연수 프로그램 검토 후 지정
- 단위 학교의 교과연구회, 교원연구 모임, 교사 동아리 등도 공모를 통하여 심사 후 지정

2-2

참여식 연수방법의 확대

- 연수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교원이 연수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
- '토의, 사례발표, 세미나, 역할 연습, 현장 체험' 등의 참여식 연수방법 적용 확대
- 단위학교의 '우수 및 실패 사례'에 대한 발표·토론을 통해 '벤치마킹' 기회로 활용
 - ※ 연수방식 : 강의식 73%, 참여식 25%, 기타 2% ('04 A연수원 자격연수 분석)
 - ※ 연수방식 선호도: 강의식 14.3%, 참여식 83.6%(워크숍, 토론, 실기실험, 탐구, 현장수업관찰), 기타 2.1%('04.4.교육과정평가원 조사)

2-3

현장 교원의 연수강사 활용 확대

- 우수 교원을 발굴하여 연수기관 겸임강사로 위촉
 - 각종 수업연구대회 입상자, 교과연구회 교원 등 별도 공모
 - 발굴 교원에 대해서는 기초적 진단을 통해 자질 및 강의법 등을 검증한 후 일정기간 겸임강사로 위촉
 - ※ 연수기관에서는 강사의 50~70% 이상을 '대학 및 당해 연수기관 교수 또는 교육전문직' 등으로 선정함으로써 연수내용의 현장 적합성 약화
- 학기 중에도 출강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 해당 교원의 학교업무와 연수과정 출강일정을 사전 조율하도록 하여 업무공백 최소화

- 교실 수업 지원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은 연수의 종류에 따라 현장교원
강사 적극 활용

※ 강사선호도 : 현장교사 58%, 교수 13.7%, 관련분야전문가 16.1%, 교육전문직
2.7%('04. 4. 교육과정평가원 조사)

2-4 연수기관별 연수대상 제한 폐지

- 교원들에게 연수기관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연수기관별 연수
대상 제한 폐지

※ 연수대상제한 폐지 찬성 80.4%, 반대 19.6%(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팝업
창을 통한 여론조사, '05. 8.10-9.10)

- 교육대학 및 대학부설 연수원의 명칭을 「교육연수원(가칭)」으로 하고,
연수대상을 전체 교원으로 확대

- 초등교육연수원, 중등교육연수원 → 교육연수원(가칭)

※ 현행 연수규정에는 교육대학·대학부설연수원의 명칭을 '초등교육연수원,
중등교육연수원'으로 하고 각각 해당 학교 급별 교원만을 연수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음

- 교육연수원에서는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연수과정 이외에 모든
학교급별 교원들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연수과정 추가 편성·운영

3. 연수기관 질 관리 체제 확립

3-1 연수기관 평가인증제 실시

□ 평가주체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원격연수원, 시·도교육연수원, 대학부설 연수원을 평가
- 시·도교육감은 특수분야 연구기관 평가
- 교원연수기관의 연수과정 전반은 독립적인 전문기관에서 평가

평가 주체	평가대상	평가 중점	평가 결과
교육인적 자원부장관	원격 연수원 시·도교육연수원 대학부설연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원 운영계획 • 연수 프로그램 편성· 운영 실적 	공개 (수요자 선택 기회 부여)
시·도교육감	특수분야연수기관		

※ 교원연수기관의 연수과정 전반을 독립적인 전문기관에서 평가

□ 평가·인증 추진일정

구분	1단계('08)	2단계('09)	3단계('10)
내용	원격연수원 특수분야연수기관	시·도교육연수원 대학부설연수원	이의신청기관 재평가

□ 평가결과의 활용

- 교원연수기관으로서의 최소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연수기관 인가 취소

3-2

원격연수 확대 및 「원격연수지원센터(가칭)」 설치·운영

□ 각종 연수과정에 원격연수(e-Learning) 확대 권장

○ 연수교과의 특성에 따라 원격연수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수업 공백 최소화 등 연수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개선

- 필수 소양 과목 등을 추출하여 원격 재택연수 등 일정부분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현재 원격연수 적용비율은 전체 연수 중 8%로 매우 저조

□ 「원격연수지원센터(가칭)」 설치·운영

○ 센터의 주요 기능(안)

- 국가 수준의 원격연수 품질관리 운영을 위한 지침 개발 보급

- 시·도교육연수원, 대학부설 원격연수센터, 민간 원격연수기관의 상호 협의체 구성 지원

- 선도형 원격연수 프로그램 개발 보급

- 교원 연수 분야의 원격연수 모니터링 체제 구축 및 성과 분석

- 시·도교육연수원의 원격연수 운영 핵심요원 양성 및 지원

- 원격연수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제 실시 지원

3-3**연수기관간 협력체제 강화**

- 전국단위로 시·도 교육연수원 협력체제 구축·운영
 - 교육인적자원연수원을 중심으로 16개 시·도 교원연수원 협력체제 구성·운영
 - ※ 지역별 협력체제 구축 추진 중 : 경인교대부설 원격교육센터 및 교원연수원과 경기도울곡연수원, 인천교육연수원간 협의 중
 - 연수기관 상호 발전 방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연수운영 개선 도모

- 지역단위로 시·도교육 연수원과 양성대학간 연수기관 협력체제 구축
 - 교원연수기관 상호간 정보교환 및 정기적인 연찬회 개최
 - 자격 및 직무연수 프로그램 합동 개발
 - 우수 강사군(pool) 공동 활용
 - 개별 연수원이 개발하기 어려운 희소교과에 대한 연수과정 공동 개설 운영

IV. 기대 효과

□ 교육행정가의 리더십 강화

- 변화하는 학교경영환경에 적합한 교육행정가의 직무수행능력과 리더십 함양 촉진

□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 촉진

- 1급 정교사 자격취득 이후 주기적으로 연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

□ 수요자 중심의 연수제도 확립

- 학교현장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현장과 유리된 이론 중심의 연수를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연수방식을 도입하여 수요자 중심의 연수제도 확립

□ 연수기관의 책무성 강화

- 연수기관 및 연수과정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여 연수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질 관리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연수기관의 책무성 강화

V. 추진 계획

- 후속조치 기본계획 수립 : '06. 10월까지
- 국가수준의 법령 및 제도정비 : '07. 8월까지
- 연수기관 수준의 제도 정비 : '07. 12월까지
- 연수제도 개선안 적용 : '08. 1월

<붙임 자료>

외국의 교원연수제도 및 시사점

1. 각국의 교원연수제도 현황

가. 미국

□ 연수제도

- 각 주 및 지역교육청마다 상이하여 일반화하기 어려우나 지역교육청 단위로 해당지역 대학들과 계약을 맺어 대학원 과정의 코스 설치
- 교사 본인의 희망에 의해 자율 수강하며, 연수 이수는 자격증 갱신이나 보수와 연계되어 있음
- 45개 주에서 교사자격증 유지와 관련하여 일정시간의 연수 및 학위 취득을 요구함
 - ※ 매년 30시간 의무연수(텍사스주, 휴스턴주), 매 5년마다 자격증 갱신시 최소 5개 활동영역 100시간 이상 연수(일리노이주, 메릴랜드주), 매 5년마다 6학점(120시간) 이상의 현직연수로 자격증 갱신(플로리다주)

□ 교장자격 관련 연수 운영

- 교장·교감 자격연수 프로그램이 없음
 - ※ 자격 요건은 있으나 자격증 유무도 주별로 다름
 - 일리노이, 인디애너,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뉴욕 등 : 자격증 요구
 - 미시건, 남캐롤라이나 등 : 특별한 자격증 요구하지 않음

- 교장 자격 기준이 주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나, 35개 주에서 관련단체연합체인 ISSLC(Inter State School Leadership Consortium)에서 제시하는 교장 자격기준을 주 정부에서 대학의 교장 훈련 프로그램에 반영토록 권고하여 학교장의 리더십 향상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교장 훈련 프로그램의 개설과목 : 이론적 기초, 장학, 교육행정 기능, 리더십, 교육법규, 교육탐구, 학교평가, 인간발달, 교육과정, 다중문화사회에서의 교육, 학교경영, 교육리더십의 실제, 중간관리자의 역할

< 미국 대학원의 교육행정가 자격연수 >

필수과목(24학점)	내 용
○ 학교조직 및 경영	• 학교의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조직, 시설 및 각종 자원의 관리·조정
○ 학생발달 및 평가	•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처리, 학생발달 수준의 평가
○ 장학 및 교수·학습	• 교사의 학생지도 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과 기술,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방안
○ 교수·학습의 이론과 실제	• 교수·학습의 다양한 이론 소개, • 교육효과를 증진 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의 전략, 교사의 수업전략 지원 방법
○ 펜실베니아주교육법	• 펜실베니아 주 학교 교육에 관한 각종 법률, • 지역교육청, 주정부 교육 및 연방정부의 교육에 관한 법률
○ 교육혁신을 위한 지도성	• 사회변화와 교육환경의 변화 이해, •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학교 조직의 적응력, • 학교 및 교직원과 사회 환경과의 관계
○ 현장 실습	• 교육과정 이론의 학교현장 적용 검토, • 교육과정 및 교수지원을 위한 지도력
선택과목(3학점)	내 용
○ 소외집단 관련법과 사회	• 소외집단에 관한 각종 법률 및 지원, • 교육복지 관련 사업과 대책
○ 정보기술과 교육 지도자	• 교육에 관한 정보기술 이해, 정보통신의 활용
○ 특별주제	• 도시지역 및 농어촌지역의 교육문제

※ 자료 : University of pittsburgh, 2004. School of Education('04. 6. 30.)

□ 주요특징

○ 지속적인 교사 연수 환경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 교사연수비 배정 : 단위학교 예산 중 15~20%

방학 중, 학기 중, 방과후 등 연중 다양한 형태의 연수 실시

○ 신규교사 및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대학이나 지역교육구 등에서 실시하고 있음.

※ 연수과정 : 학급관리, 동기유발, 학생 훈육법, 컴퓨터교육, 기타 워크샵 등

나. 영국

□ 연수제도

○ 영국의 교사 구분 : 자격별로 보수체계가 다름

- 자격 없는 교사(unqualified teacher)
- 자격증 있는 교사(qualified teacher)
- 우수교사(advanced skilled teacher)
- 보직교사(leadership group)

○ 교사 자격이 없는 교사(unqualified teacher)가 정규 교사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주정부가 인정하는 「기본적 교사 훈련 과정」 (ITT Initial Teacher Training)을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이수

○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으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지역 고등교육기관에서 2년 과정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

○ 우수교사(advanced skilled teacher)가 되기 위한 연수 등은 별도로 없으며 교사 개인이 자격 인정을 위해 정부 승인을 받은 다양한 연수기관에서 선택에 의해 자율 이수

- 단위 학교에 교원 현직개발을 위한 기준기금(Standard Funds)을 지원하고, 승인된 연수기관도 프로그램 단위의 평가를 통해 현직개발 지원 경쟁 기금제도(award-bearing In-service Education and Training scheme)에서 입찰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음

※ 교육기준청(Ofsted)이 연수기관에 대해 3년마다 평가하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강좌에 대해 '현직 교육 요구의 반영 정도'를 심사하여 반영함

- 80년대 이후 교사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사 연수제도를 비제도화에서 제도화로, 기관중심 연수체제에서 학교 및 교사 중심 연수체제로 전환

□ 교장자격 관련 연수 운영

- 98년 이후부터 신규 교장 임용 대상자는 국립교장연수원(National College for School Leadership)이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거쳐 국가교장자격증(National Professional Qualification for Headship)을 획득해야 함

※ 국가교장자격 취득 프로그램 내용 : ① 학교발전방향 전략, ② 교수와 학습, ③ 교직원 관리, ④ 효율적인 자원관리, ⑤ 책무성

- 연수기간 및 과정이 대상자의 경력 및 전문성에 따라 달라지나 최소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되며 연수비는 정부가 지원

< 영국의 교장자격증(NPQH) 취득과정 및 연수 >

단 계	내 용
1단계(신청 및 선정)	• 일정 경력을 갖춘 교장지원자의 신청 및 선정
2단계(수요조사)	• 면담과 관찰을 통하여 훈련 분야 파악
3단계(훈련 및 개발)	[5대 핵심훈련 영역] 1) 학교발전 방향 및 전략, 2) 교수·학습 3) 교직원 관리, 4) 효율적인 자원관리, 5) 책무성
4단계(평가)	• 실패하는 경우 재평가는 3년 범위내에서 1회 부여

□ 주요특징

- 교원의 양성과 자격 체계를 현직 연수와 연계하여 운영
- 학교 행정가로서 교장의 자격을 강화하여 '04년 이후 신규 교장 임용자는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함
- 국립교장연수원의 교장자격연수 이외의 직무연수는 별도의 연수 전문 기관이나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연수 체제로 운영
- 연수 결과가 향후 승진, 호봉, 훈련 등의 기회와 연결되어 있어 개인의 선택에 의해 자발적으로 연수에 참여

다. 프랑스

□ 연수제도

- 연수가 승진이나 보수와 연계되어 있지 않으며, 교사 자신이 느끼는 교육적 필요에 의해 자율로 이루어짐.
- 교사들은 교원 재직 기간 중 총 36주의 연수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연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함
- 연수주관 : 교원계속 교육을 위한 학술플랜(MAFPEN : Mission Academique a la Formation des Personnels de l'Education nationale)에 의해 각 아카데미가 실시
- 교사 개인이 연수가 필요할 때 자신이 속해있는 아카데미에 요청하면 각 아카데미는 각 지역의 실정에 따라 대학, 교육행정기관, 교육부의 협력하에 이들을 위한 연수를 실시

□ 교장자격 관련 연수 운영

- 유·초·중학교 학교급별에 따라 교장의 명칭, 자격요건, 임용방법이 다름
- 공개경쟁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합격자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장 훈련(연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유·초 교장후보자 :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임명 전·후 5주 훈련
 중등교장후보자 : 교장 훈련 과정인 2년간의 교감 근무

라. 일본

□ 연수제도

- 교원의 연수는 도도부현 및 시구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직원연수 센터에서 실시
- 연수의 종류

연수종류	연 수 명	대 상 자	비 고
직층연수	• 주간연수 · 독립학교주임연수 • 관리직등연수	주임교사 교장, 부교장	
필수연수	• 초임자연수 · 신규채용자연수 • 독립학교2·3년차수업연구 • 10년경험자연수 • 영어교원집중연수	신규교사 발령2~3년교사 발령10년교사 영어교원	의무연수
선택과제연수	교과, 교육과정, 산업·정보, 동계 및 하계집중강좌, 선택과제연수 I,Ⅱ,Ⅲ 단계	교사 및 관리직	

* '05년 동경도교직원연수센터 연수운영 안내

○ 교육관리직후보자 연수(관리직등 연수)

구분	A선고	B선고
목표	• 행정감각이 뛰어난 관리직 양성	• 학교운영 능력이 뛰어난 관리직 양성
임용방침	• 5년간의 관리직 후보 기간 • 지도주사 등 행정계통에 임용	• 2년간의 관리직 후보 기간 • 학교기간요원으로 배치
연수내용 및 기간	• 5년간 연수 • 경영관리, 위기관리 능력 육성 • 연습, 사례연구 등 참가형 연수 • 장기과견연수	• 2년간 연수 • 인사노무관리 법령, 회계, 학교 경영실무능력 • 단기간의 강의중심 연수

* A선고는 우리의 교육전문직 선발시험, B선고는 교감 선발시험과 유사

○ 초임자 연수

- 신입교원에 대해 1년간 연수 실시

※ 연수내용 : 교내연수 연 60일, 연수센터 연수 30일, 3박4일 숙박연수, 9일 정도의 선택과제 연수 등

○ 10년 경험자 연수

구분	내용
대상 및 시기	• 교직 10년차 교원에 대해 그 다음 연도에 수강 (교육공무원특례법에 의해 의무연수로 지정됨)
실시기관	• 초·중학교 : 시구 교육위원회 • 고등학교 :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연수 계획 및 평가	• 연수 전 평가 : 능력과 적성에 대한 평가 실시 • 연수계획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이 자신의 특성을 파악하여 주체적인 계획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 승인 : 교장이 면접을 통해 승인 • 연수 결정 : 승인 계획을 교육위원회에서 제출받아 결정 ※ 평가가 낮은 교원(지도력부족교원)은 별도 코스 마련
연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지도 • 학교운영, 생활지도·진로지도에 관한 내용 •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자질 향상에 관한 내용
연수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자질과 능력에 맞춘 연수이므로 시간은 조정 가능 • 대체적인 기준은 교내연수 15일(30학점), 교외연수 15일(30학점) 총 60학점 이수

○ 선택과제 연수

- 자율적인 연수체제로 스스로 계획하고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구분	스테이지 I (기초)	스테이지 II (충실)	스테이지 III(발전)
대상자	경력2~10년	경력12~20년	경력21년 이상
연수목적	자기과제와 부족한 분야를 극복하기 위한 지도력 향상 연수	자기과제 해결과 동시에 특기분야 연수를 통한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주체적인 연수 계획에 의해 학교 운영에 관계된 자질 개발 연수
연수형태	연수원연수	연수원연수 야간대학 청강 대학원강좌 수강	야간대학 청강 대학원강좌 수강 민간연수, 연구회 참가
연수내용	학습지도안 작성, 교재해석, 평가방법, 지도기술 등	지도방법·평가방법 개선, 교재개발, 수업분석 등	전문적 지식 기술 습득 교육실천연구, 지도력 향상, 수업개선 등

□ 교장자격 관련 연수 운영

- 교장 임용 시험인 '관리직 선고'(도쿄도의 경우) 합격 후 선고 유형에 따라 관리직 연수 실시
 - A유형 선고 : 교직경력 7년 이상인 33~42세인 교원 대상
→ 합격 후 5년 이상 교육관리직 후보로 행정직무 경험
 - B유형 선고 : 교직경력 14년 이상인 44~56세인 교원
→ 2년 이상 교육관리직 후보로 행정직무 경험
- 교장 자격 요건을 완화하면서 교사 자격증이 없는 민간인 교장제도도 도입함.
 - ※ 민간인 교장 '00년 첫 임용 후 '04년 현재 92명 임용
- 교장 자격연수가 없는 대신 임용 후 현직 또는 초임 교장 연수를 강화하고 있으며, 민간인 교장의 경우 1년 정도의 임용 직전 연수 실시
 - ※ 민간인 교장의 직전 연수 내용 : 교육행정 및 조직, 관리직의 역할, 인재 활용과 육성, 지역 및 학부모 관리, 학교 환경, 노무관리, 학교경영계획 작성, 학교 관련 판례, 학교방문, 인권존중, 회계, 현대의 교육과제, 공공시책, 수업참관 등

□ 주요특징

- 교원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현직연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교원의 생애단계에서 요구되는 자질 능력에 따른 체계적 연수 실시
- 초임자 연수와 10년 경험자 연수 의무제 도입으로 교원 연수 강화
- 연수기관 중심의 연수 이외에도 대학이나 연구소 및 민간기관 파견 연수와 사회체험 연수 등 다양한 연수 운영

마. 독일

□ 연수제도

- 교원 자격 취득 과정(전공 2과목, 실습 2년, 국가 시험 2차 등)이 까다로워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별도 훈련프로그램이 없고 직무연수 의무 부담도 없음
- 전국 차원의 연수 정책 없이 주별 교원연수기관에서 현직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자율 실시
 - ※ 연수 종류 : 학교행정 · 인사 분야, 미디어 분야, 일반교육 분야, 직업교육 분야
- 학교 자체 연수나, 주 심사를 거친 사립기관 및 대학에서도 연수를 실시

□ 교장자격 관련 연수 운영

- 교장 임용은 일반 교사 자격증을 기본 요건으로 공개 전형하므로 교장 자격증 제도가 없음
- 임용과 관련한 연수는 없으나, 최종 합격한 교장은 교육청이 주관하여 주별로 6~18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쳐 임명됨

□ 주요특징

- 연수는 의무가 아니라 권장사항으로 교육적 필요에 의해 이수
- 상급 자격 취득을 위한 별도 연수는 없으나 대학의 석사·박사과정 이수가 선임교사 및 교장 승진의 요건임

바. 캐나다

□ 연수제도

- 교장 교감 자격연수 및 교사를 위한 직무연수가 있으며, 자격연수는 승진 및 보수에 반영되고, 직무연수는 재계약, 호봉 재사정 자료로 활용됨

※ 5개의 인증 직무연수를 이수하면 1년 경력 승급분에 해당하는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교사의 자격과 연수 실적은 교육부 산하 주교원협의체에서 등재 관리함

- 신규교사의 이직율을 낮추기 위한 교직유인프로그램(Induction Programs)을 운영하고, 신규교사의 20%내외는 주정부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2년간의 멘터링 프로그램을 실시함

※ 신규교사 직무연수 내용 : 교육정책 목표와 비전, 직무기준, 교수 행위 및 학습자의 학습 형태에 대한 전문성 제고, 교육공동체와의 책임 공유 등

- 경력교사의 경우, 교원직무평가(TPA)와 연계된 연간자기연찬계획(ALP)에 따라 자비로 주교원협의체 또는 대학에서 필요한 연수 이수(1~3학기 과정)

※ '04년도까지 의무적인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프로그램(Professional Learning Program)이 있었으나 교사들 대부분이 필요에 의해 개별로 연수를 이수하기 때문에 폐지됨

□ 교장자격 관련 연수 운영

- 교장, 교감 자격 취득을 위하여 각각 125시간의 연수과정과 지도력 입증 실습과제 이수

※ 교장 교감 자격 기본 요건

교감 : 교사 경력 5년 이상인 자, 교장 : 교사, 교감 경력 7년 이상인 자

○ 자격연수는 사범대학이나 주정부의 위임을 받은 교육기관에서 실시

□ 주요특징

○ 교사 자신이 연수를 통해서 취득한 다양한 자격(상담, 사서, 특수교육 등)과 직무연수 실적은 보통 3~4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고 보수에 직접 반영되기 때문에 본인의 필요에 의해 자비로 다양한 연수를 받음

○ 관할 교육청에서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무연수의 날 (Professional Development Day or Activity)을 연 4일 정도 운영하여 학교 현장에서 당면하는 현실 문제에 대한 연수 실시

2. 각국의 연수제도 비교 및 시사점

가. 비교

국가	연수기관	연수제도	교장임용 관련연수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교장연수원 정부 승인기관 단위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수 결과 승진, 호봉 등과 연계 자발적인 연수 참여 교원 현직개발을 위한 재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위학교, 정부 승인기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취득을 위한 국립교장연수원의 6개월 내지 2년의 의무 연수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직원연수센터 (도도부현 및 시구교육위원회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무연수제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임자연수(1년), 10년 경험자연수(60학점 30일) 직층연수(교육관리직후보자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A선고 5년, B선고 2년간 연수 선택과제연수(경력별 3단계 자율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수, 대학원 수강, 민간 파견, 연구생 활동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는 없으며, 현직 교장의 직무연수 강화 자격증 없는 민간인 교장은 1년간 임용 직전 연수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지역교육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증과 연계한 일정 시간 의무 연수 및 학위 취득제 실시 학교 예산의 15~20% 연수비 신규교사의 멘토링제 연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에 따라 다양하나, 대학의 교장 훈련 프로그램 이수가 교장 지원 자격 기준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교원협의체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 승진, 보수, 재계약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5개 연수 이수 시 1년 경력승급 반영 신규교사 멘터링 프로그램 운영(2년) 의무연수제 폐지-자율 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5시간 연수 이수 후 자격 취득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술플랜 (MAFPEN)에 의해 아카데미가 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적 필요에 의해 자율 연수 승진, 보수와 연계되어 있지 않음 대학, 행정기관, 교육부 협력하에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연수 없음 유·초 : 임용전후 5주 훈련 중등 : 2년 교감 근무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별 연수기관 민간 및 대학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수는 의무가 아니라 권장사항 상급 자격 취득 연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연수 없음 주별로 6~18개월의 수습기간

나. 시사점

- 교원연수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
- '연수 의무화, 자격 갱신'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현장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적응' 유도
- 단위학교, 교육행정기관, 연수기관 등이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연수를 지원하고, 충분한 '연수 예산'을 확보
- 교장의 전문적 자질을 중시하여 '교장자격증제' 도입 및 교장자격 관련 '연수기간 장기화'
- 교원 '양성기관에서 현직연수'에 주도적인 역할 담당
- 연수기관에 대한 '평가·공개'를 통해 연수의 질 확보